

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(가칭)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(가칭)를 설치·운영하여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및 집단교육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공공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
- 나. 「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시설 및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(가칭) 설치·운영

- 소재지 : 서울시 (예정)
- 시설규모 : 165㎡ 이상
- 공간구성 : 상담실, 교육실, 대기실, 사무실 등
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
 - 「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필요성

-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 6.5%(중양값 5.5), 우울증상유병률 3.7%(중양값 2.8), 스트레스 인지율 27.2%(중양값 25.2) 등 대부분의 정신건강문제 지표가 전국 중양값보다 높아 대책이 요구됨
-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심리지원센터 3개소의 연간 이용인원이 16,450명('18년) → 17,359명('19년) → 19,051명('20년)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울시민의 심리지원 수요가 높아 심리지원센터 추가설치를 통한 공공심리지원 서비스 확충 및 지역별 심리 서비스 제공 불균형 완화가 필요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동료 상담가 교육·양성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취약계층 대상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
-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기간 : '21. 9. ~ '22. 8.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바. 소요예산 : 128,360천원('21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정신건강복지법

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·치료를 위한 교육·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센터의 설치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3.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 이지인 (☎ 2133-7555)